

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

수급 자격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사업주	회사명	
	소재지	
실업급여의 종류		
부정 수급	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	
	② 추가징수금액	
	③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	
	④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	
	⑤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	
납부할 금액(①+②+③+④+⑤)		
납 부 방 법		1. 일시 납부 2. 분할 납부(회)
지급중지(제한)일		
지급 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내용과 사유		

귀하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「고용보험법」 제61조, 제62조, 제69조의9 및 제77조의5제2항·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지급 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·제93조의2·제104조의8제8항·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·제115조의5·제125조의4·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면 위 “납부할 금액” 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

심사청구 안내

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FAX번호()